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안]

2023. 11.



고용노동부



목 차



I . 목적	1
II . 그간의 경과	1
III . 2024년도 포상개요	1
IV . 포상기준·자격 및 심사기준	2
V . 포상대상자 추천	8
VI .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13
VII . 향후 추진일정	14
※ 붙임 1.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15
붙임 2.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	21
붙임 3. 포상 신청시 제출서류(1~7)	23
붙임 4.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결과(양식)	32
붙임 5. 포상계획 안내문	33
붙임 6.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양식)	36

I**목적**

-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이바지

II**그간의 경과**

- 1975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총 18,100명을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18,100	41	122	203	276	410	1,123	3,105	3,730	9,090

- 2023년에는 총 189명을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189	-	2	4	4	5	16	52	56	50

* 노동자(135명, 71.4%), 노조간부(40명, 21.2%), 기타(14명, 7.4%)

III**2024년도 포상개요****【 운영 방 향 】**

- ◆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포상
- ◆ 여성·장애인·현장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 우대
- ◆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한 포상의 명예성·신뢰도 제고

① 포상대상

-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
-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한 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② 포상규모(안)

-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으로 포상대상이 확대되어 포상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포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5% 가량 규모 확대 요청
 - 최종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24년도 포상규모(안) >

(단위: 점)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24년	200	18	19	54	59	50
'23년	189	15	16	52	56	50

③ 포상수여: '24. 4월말

IV 포상기준·자격 및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붙임1 참조)

- 관련 근거: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 공적심사 시 주요 심사지표
 -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 원·하청 상생협력 기여 실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여한 실적
-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
- 장시간근로 개선 등 함께 일하기 기여 실적
- 현장 노동자 고충·상담처리 등 노동자 보호 실적
- 사회공헌활동 실적

※ 유의사항: 근로자의 날 포상은 개인유공이므로 공적기재 시 **본인의 활동과 무관한 사업장 전체의 공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 재직기간 및 가·감점기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i) 재직기간

·기준일: 추천기준(마감)일

·수상자가 실제로 수공(재직)한 기간(여러 기업·단체에서 수공한 경우 합산)

ii) 가점기준

·여성: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 등과 무관하게 가점 부여

·현장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의 생산현장에 근무 중인 자(사무직 제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따름

·경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iii) 감점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 감점

< 포상대상자별 심사기준 >

포상대상자	항목별 심사기준				가 점 (최고 7.5)
	계	재직기간 (50점)	공 적		
			50점	평가 요소	
노동자	100점	재 직 년 수 × 2.0점	■ 세부 심사 자료에 따라 심사	■ 불임1 참조	■ 현장직 (2.5) ■ 여성 (5.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2.5) ■ 중소기업 (2.5) ■ 노사문화우수기업 (2.5)
노조간부	100점	상동	상동	상동	■ 여성 (5.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2.5) ■ 노사문화우수기업 (2.5)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공 무 원 노사관계발전유공자	100점	상동	상동	상동 (노동자)	■ 여성 (5.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2.5)

* 수공기간 최저 요건: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임용 전 병역 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② 재포상 금지 기간(2023 정부포상업무지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재포상 금지기간의 기산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③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기준 (2023 정부포상업무지침)

※ '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추후 별도시달

가. 일반국민 포상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⑤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⑥ 기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의 날 포상 관련으로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동일한 공적으로 재차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⑦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의 후 순위자
 -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최소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 포상 대상별 포상자격 기준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 * ①사용자(사업주 외에도 임원, 공장장, 점장 등 조직단위 최고책임자로 해당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 등)를 노동자로 추천한 경우 ②노조 간부를 노동자로 추천한 경우 포상추천 제한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3년간 추천 제외)

나. 재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③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이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를 저지른 자는 추천 불가능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⑤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⑦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대상별 포상자격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노조간부, 공무원,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대 상	요 건	기준일 (접수마감일)
국내취업자	■ 만 20세 이상 ■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같은 사업체 또는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종사	'23.12.19.
근로청소년	■ 만 20세 미만 ■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	'23.12.19.
해외근무자	■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	'23.12.19.
공무원	■ 1년 이상 재직	'23.12.19.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조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 - 단위노조와 그 소속 연합단체 노조간 이동은 같은 노조에서 재직된 것으로 봄	'23.12.19.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	'23.12.19.

* 노무제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V

포상대상자 추천

① 추천인원

- '24년 포상규모 및 결격 사유자 발생 가능성, 지방관서 포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천인원은 총 254명으로 함
- '24년 포상추천 및 수여현황 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기관별 추천인원을 적정 배분하되, 기관별 추천순위 및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포상 결정

② 추천기관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추천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 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
 - *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

대 상 구 분	대 상 자	접 수 기 관	추 천 기 관
노 동 자	국내취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근로청소년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시·도 공무원	시·도지사	
노조간부	연합 단체	고용노동부(노사관계지원과장, 공공노사관계과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단위 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해외근무자	노동자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 이외에,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 명망 있는 인사 추가 선발(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제3항)

③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가. 총괄

구분	추천인원	추천기관
총인원	254	
노동자	178	
· 국내취업자	156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근로청소년	5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공무원	17	시·도지사(17개)
노조간부	60	
· 단위노조·지역연합단체	50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상급연합단체	10	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관)
해외근무자	10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6	
· 지방	5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본부	1	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관)

* 국내취업자 중 노무제공자 추천비율은 추후 시달

나. 기관별 추천인원

○ 본부

구분	노조간부(상급연합단체)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총인원	10	1
노사협력정책과	-	1
노사관계지원과	9	-
공무원노사관계과	1	-

* 공적우수자가 많을 경우 추천인원 초과 가능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구분	계	국내노동자*	근로청소년	노조간부 (지역단위노조)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총인원	216	156	5	50	5
서울청	40	30	-	10	-
중부청	25	21	1	2	1
부산청	37	29	-	7	1
대구청	32	20	1	10	1
광주청	24	18	-	5	1
대전청	34	27	1	6	-
경기지청	12	5	-	7	-
강원지청	12	6	2	3	1

* 국내 취업자(근로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 시·도

구 분	공 무 원	총인원
17개 시.도	각 1	17

○ 해외공관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국가 중 개발도상국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나라를 우선하여 추천기회 부여

총인원	해당 국가명	해당 인원
10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각 1 (국가별)

- * 최근 10년 간 신규법인수가 많은 국가순: 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케이만군도, 태국, 필리핀,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 멕시코, 몽골, 캄보디아, 호주, 우즈베크(23.6월 기준,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④ 국민추천제 실시

-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2023 정부포상업무지침)
 -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 접수를 위하여 포상계획 적극 홍보 및 홈페이지 등에 국민추천서 게재
 - * 국민추천서는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별지 제1호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활용
 - 국민추천제 안내·홍보 시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
 - *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 방지
 - *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

⑤ 추천 시 제출서류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한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포상대상자 추천서,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 * 접수기관에서 추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식 상의 '추천순위'를 '연번'으로 하여 작성·제출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 포상대상자 이력서
- * 경력란에는 현 소속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증명서,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하여 기록하고 인정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 위의 서류를 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실적 등을 포함한 공적사실을 구체적·개량적으로 기재

< 바람직한 공적개요 작성 예 >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소속	직책	생년월일 (성별)	재직 기간	공적개요 (예시)
						● '00년 00을 생산하는 00업체에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여 00년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여 연간 00건의 고충상담과 00건의 고충처리를 하는 등 현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00년~00동안 연 10건의 제안활동을 통한 00백만원의 원가절감 및 현장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00공정 작업매뉴얼을 만드는 등 기술전수에 노력 (또는 '00년 임단협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T/F 구성 및 근로시간 축소(44시간 →40시간) 합의 등) - 특히, 생산반장으로 재직시 품질분임조 운영을 통해 분임원들과 00공정의 00작업방식을 00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적용함으로써 00년 생산시간 00시간 단축, 원가절감 연 00백만원 달성에 기여 (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3조2교대를 4조3교대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3개 이내)을 되도록 계량적으로 기술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 *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이 경우 보완토록 조치)
 △적극적인 사고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 및 고객만족 실천
 △원만한 대인관계 및 동료애 실천 △직장의 안전한 평화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육성하는데 기여 △지역 불우이웃 돕기 실시 등

⑥ 추천 시 유의사항

-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
 -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사항 게재,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 공문 발송 등
- 현장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한 노동자 및 여성·장애인·중소기업 노동자 적극 발굴
 - * 관내 노사단체 외에 자치단체,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현장의 숨은 유공자 발굴**
-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
 - 해당지역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배려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노조간부 발굴
 - * 노조 간부 추천 시 **나눠 먹기식 추천 지양**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 노조간부 또는 사용자를 노동자로 추천하거나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붙임 4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결과(양식) 활용
 - 또한, 일부 직·업종에 편중된 추천을 지양하고, 직종별·업종별·사업체별 전체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포상기회** 제공
 - * 동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하거나 '23년도 수상자를 배출한 사업장 노동자를 '24년에도 추천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
-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 포상후보 확정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아래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
 - * **추천 신청서 접수(~12.19), 접수현황 보고(12.21),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12.26)**

VI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①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근거하여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
-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338호) 제7장(상훈)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위원장: 차관)
-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 민간심사위원 포함·운영

○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2023 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 포상 수여 예정일 90일 전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개시
-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② 포상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 실시

VII

향후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기관(유관기관)
'24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23. 11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23. 11월	접수·추천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23. 11. 27(월) ~'23. 12. 19(화)	접수기관
고용노동부(본부)에 접수현황 보고	'23. 12. 21(목)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고용노동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23. 12. 26(화)	추천기관(포상규정 제7조)
각종 조회결과 확인 및 자료준비	'23. 12. 27(수) ~'24. 1.10(수)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공표 조회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거래법 위반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근로기준정책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사업장 조회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지방고용노동관서
- 포상경력 조회		행정안전부
- 세금체납 조회		고용노동부(본부)
공개검증 실시 (15일 간)	'24. 1. 4(목) ~ 1. 19(금)	고용노동부(본부)
포상규모 협의 개시	'24. 1월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포상후보자 선정	'24. 3월 초	고용노동부(본부)
-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24. 3월 중순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실시	'24. 4월말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정	1993. 8.11.	노동부훈령 제369호
개정	1995. 6. 7.	노동부훈령 제402호
개정	1996. 2.14.	노동부훈령 제414호
개정	1997. 1.15.	노동부훈령 제443호
개정	1997.12. 6.	노동부훈령 제460호
개정	1998.12. 1.	노동부훈령 제485호
개정	1999.12. 8.	노동부훈령 제508호
개정	2000.12. 1.	노동부훈령 제526호
개정	2001.12. 5.	노동부훈령 제539호
개정	2004.11.24.	노동부훈령 제585호
개정	2006.12.18.	노동부훈령 제633호
개정	2008.12.30.	노동부훈령 제682호
전부개정	2012. 1. 4.	고용노동부훈령 제 59호
개정	2022.12.20.	고용노동부훈령 제4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자) 포상대상자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취업자: 추천일 현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로서 같은 사업체 또는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근로청소년: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노동조합간부: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에서의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해외근무자: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공무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4조(포상종류)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장.포장
2.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3.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안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 수.사업체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2항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포상대상자 발굴 등) ①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포상대상별 추천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접수기관별로 배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별 추천인원수는 접수기관별 근로자 수.사업체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따른 접수를 포함한다)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자체공적심사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접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추천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지역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장 재직기간 및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산정.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한다.
2. 공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제한 등) ① 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후보자 결정) ① 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 및 추천기관

대 상 \ 구 분	포상대상자	접수기관	추천기관
노동자	국내취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근로청소년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공무원	시 · 도지사	
노동조합간부	연합단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단위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시 · 도지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시 · 도지사
해외근무자	노동자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 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하고,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 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해야 함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

포상대상	계	재직기간	공적	가점·감점
노동자	100점	50점	50점	① 현장직(2.5) ② 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③ 중소기업(2.5) ④ 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⑤ 벌금형(-1)
		재직년수 × 2	영역별 공적	
노동조합간부	100점	50점	50점	① 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③ 벌금형(-1)
		재직년수 × 2	영역별 공적	

※ 가점은 대상별 가점항목(①·②·③·④)별 점수를 각각 부여하되 최대 7.5점을 부여하고, 감점은 최근 2년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을 부과

※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노사관계발전유공자, 공무원은 공적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

훈격별 후보자 명부 작성기준

훈 격	후보자 선정	비 고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수공기간 1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10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행정안전부 포상 추천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포상 추천기준을 적용함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노동자 등)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채직기간 (공적기간) (5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경력 년수	50	채직년수×2.0점 (최대 50점)
핵심 공적 (20)	○ 대상자가 포상 대상자로서 내세우는 공적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적에 대한 평가	20	심사자 점수부여
영역별 공적 (30)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실적	5	심사자 점수부여
	○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5	상 동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력 - 비정규직·파견·하도급 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등	4	상 동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3	상 동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한 정도	3	상 동
	○ 장시간 근로개선 등 함께 일하기 참여 및 기여한 정도	3	상동
	○ 노사관계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	2	상 동
	○ 직무·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	2	상 동
	○ 사회공헌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	3	상 동
합 계		100	
가·감점	①현장직(2.5), ②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③중소기업(2.5), ④노사문화 우수기업(2.5) <최대가점 7.5점> ⑤별금형(-1)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노조간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재직기간 (공적기간) (5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경력 년수	50	재직년수×2.0점 (최대 50점)
핵심 공적 (20)	○ 대상자가 포상 대상자로서 내세우는 공적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적에 대한 평가	20	심사자 점수부여
업적도 및 기여도 등 (30)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력 - 비정규직·과건·하도급 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등	4	심사자 점수부여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한 정도	4	상 동
	○ 장시간근로 개선 등 함께 일하기 추진 실적	4	상 동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여한 실적	3	상 동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3	상 동
	○ 현장 노동자의 고충상담, 처리 등 노동자 보호에 노력한 실적	3	상 동
	○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2	상 동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2	상 동
	○ 노사관계제도의 현장정착 노력	2	상 동
합 계	○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	3	상 동
		100	
가·감점	①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②노사문화 우수기업(2.5) <최대가점 7.5점> ③벌금형(-1)		

<붙임 3> (제출서류 1)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 대상자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노조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사유					

상기인을 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 접수기관의 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0자 이내로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년 월 일)	포 상 종 류
. . .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핵 심 공 적 >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포상대상자가 정부포상 후보자로서 내세우는 공적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적을 한 가지 선정하여 기술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공적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통계, 수치자료) 반드시 포함할 것

< 전 체 공 적 >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수치)자료 포함할 것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세부 추진실적>

1. 공적정도(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2.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3. 품질개선, 서비스향상, 친절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4.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
5. 노사관계제도의 현장정착 노력
6.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한 실적
7. 장시간 근로개선 등 함께 일하기에 기여한 실적
8. 직무·능력 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여한 실적
9. 현장 노동자의 고충상담·처리 등 노동자 보호 실적
10.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여한 실적
11.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포상대상:)

추천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시장·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생년월일 (성 별)	업종 (주생산품)	공적개요(예시)
	홍길동 (만 55세)	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	00.00.00 (남)	제조업 (자동차 부품)	○'00년 ○○를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여 ○○년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여 연간 ○○건의 고충상담과 ○○건의 고충처리를 하는 등 현장노동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부터 ○○동안 연 10건의 제안활동을 통한 ○○백만원의 원가절감 및 현장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 공정 작업매뉴얼을 만드는 등 기술전수에 노력 (또는 '00년 임단협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T/F 구성 및 근로시간 축소(44시간→40시간) 합의 등) - 특히, 생산반장으로 재직시 품질분임조 운영을 통해 분임원들과 ○○공정의 ○○작업방식을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적용함으로써 ○○년 생산시간 ○○시간 단축, 원가절감 연 ○○백만원 달성에 기여 (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3조2교대를 4조3교대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3개 이내)을 되도록 계량적으로 기술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되도록 작성 (휴면명조, 글자크기 11, 줄간격 130)

※ 작성요령: 포상대상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3조 각 호의 대상별로 구분 작성(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노동조합 간부, 해외근무자, 공무원,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소속 사업체 개요

피추천자	성명(한자)	
소속 사업체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 수	
	업종(생산품목)	
	설립일자	
	외투기업(유무)	
노동조합	명칭	
	상급단체	
	대표자	
	조합원 수	
	설립일자	
	임<단>협 만료일	
노사분규 유무		년(유·무), 년(유·무), 년(유·무)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함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직책	
	성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종합의견

※ 담당 과에서 내용을 조사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하고 담당 과장이 서명날인 하여 제출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 결과

○ 일반사항

연 번	대 상 자 명	제 외 사 유 해 당 여 부							
		벌금형이상 처분	공 정 거 래 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명 단 공 표 장 사 업 임 원 여 부	임 금 체 불 관련 명 단 공개자 여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 세 기 본 법 에 의거 체납 등으로 명단 공개자 여부	사회적 물의 악기로 포상 부적합 여부	재 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여부 ¹⁾	기타 ²⁾

1) 이미 받은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추가적인 공적 필요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을 받을 수 없음

2) 정부포상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장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최근(3년 또는 5년) 기업단위 파업 등의 발생, 조직변동 (상급노조 탈퇴, 무노조 전환 등)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요인 유무 등

○ 기타 당해연도 임·단협 타결 여부 및 전망 등

조사자	근로감독관	(인)
확인자	과장	(인)

열심히 일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 간부를 찾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현장직·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해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포상대상

대상	신청(추천)요건('23.11월 현재) 및 주요 심사지표
노동자	-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한 실적 - 장시간근로 개선 등 함께 일하기 추진실적
노동조합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한 실적 - 장시간근로 개선 등 함께 일하기 추진실적 - 노동자 고충상담·처리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실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여한 실적 - 사회적 책임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

◆ 포상내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재직기간) 최저 요건: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추천)서류: 신청(추천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2023. 11. 27(월) ~ 2023. 12. 19(화)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국민추천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 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추천 제외, 소속직원 추천 지양)

※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주소:

담당자: ○ ○ ○(전화: 000-000-000, 이메일:)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 포상수여는 2024년 4월 말 예정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과 신청(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1)과 연락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726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335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16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18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49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63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03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7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32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33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819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370-0962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48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04
충북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61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32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6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70
부천시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6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6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54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802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20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450-3518
경기지청(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275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3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16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2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41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11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37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73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26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16
강원지청(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79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24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14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39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6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97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25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7128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2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73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3-299-1152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923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67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26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41-661-5646

<붙임 6>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시장·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별	합 계	재직기간 점 수	공 점 점 수	가 점	감 점
1									
2									
3									
4									
5									
6									
7									
8									
9									
10									

※ 근로자·노동조합간부 구분 작성